

2021 특정감사 결과

- 나주시·보성군·영광군 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 -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순서

I. 감사개요	1
II. 감사 총평	2
III. 감사결과	2
1. 처분요구사항 총괄	2
2. 모범 사례	3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5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5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6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7

감사결과 총괄

■ 처분 건수 : 17건

○ 신분상 : 2건/4명(훈계 2건/4명)

○ 행정상 : 15건(시정 4, 주의 4, 개선 3, 통보 4) ※ 재정상 4.6백만원

■ 모범 사례 : 2건

I.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도 종합감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보조금 및 후원금 등에 대한 집행·정산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
-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복지 서비스 제공실태, 시설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특정감사 필요

2. 감사대상 및 범위

- 나주시, 보성군, 영광군을 대상으로 '18년 1월부터 '21년 3월까지 처리한 사회복지시설 업무 전반

3. 감사중점사항

- (보조금·후원금 집행 분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목적 외 사용 및 정산이행 여부, 후원금 관리 등
- (시설관리 분야) 화재 및 시설 안전점검 이행 여부, 시설물 처분 등
-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인권·복지서비스 제공실태 및 제도개선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4. 5.부터 4. 9.까지 5일간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 총평

- 대상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전반에 걸쳐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되어 “도 특정감사결과 처분심의회”를 거쳐 대상기관에 처분요구함
- ※ 신분상 2건, 행정상 15건(재정상 1건, 4.6백만원 포함), 모범사례 2건
- 금번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된 사항은 시군에 통보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적극행정 추진을 당부함

Ⅲ.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시군명	총계 (가:다)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 사례 (다)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E)	계 (A =a+b)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경고 (E)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계	19 (4명)	2 (4명)		2 (4명)	15	4 (4.6)	1 (4.6)				1 (4.6)	3	4	3	4		2
나주시	8 (4명)	2 (4명)		2 (4명)	5	2 (4.6)	1 (4.6)				1 (4.6)	1		1	2		1
보성군	4				3								2		1		1
영광군	7				7	2						2	2	2	1		

2 | 모범 사례

1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영상통화 및 사진제공'

코로나19로 인한 면회·외출·외박의 장기화에 따른 입소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영상통화 및 사진제공' 사업 추진

□ 운영개요

- 기 간 : '20. 7. ~ 계속
- 대 상 :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174명
- 추진기관 : 보성군 노인생활시설 7개소
 - (양로시설) 작은자의 집
 - (노인요양시설) 보성군립노인요양원밝은동산, 보성군행복노인전문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연산효자노인홈, 보성소망요양원, 엔젤요양원, 보성엘림요양원
- 추진내용 : 월 1~2회 보호자(가족)과 영상통화 및 사진(동영상)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호자(가족)과 영상통화 및 사진(동영상) 제공 3,132회(월평균 348회)

□ 기대효과

- 보호자에게 입소자의 일상생활 또는 프로그램 사진을 제공하여 불안함 해소 및 정서적 안정
- 면회·외출·외박을 금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2 수요자 맞춤형 노인 돌봄 전문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복지시설 대면 프로그램 중단 및 주변과 소통 부재로 노인 우울증·자살 증가에 따라 노인 돌봄 전문 프로그램 운영

□ 운영개요

- 기 간 : '19년~'20년 (2년)
- 대 상 : 나주지역 만 60세 이상
- 추진주체 : 나주시노인복지관, 나주시양로원
- 사 업 비 : 38,684천원(도비 15,474 , 시비 23,210)
- 프로그램 : 2종(비대면 1, 체험 1)
 - (내 마음의 동반자) 개인·집단 상담, 건강교실, 숲 체험 등
 - (꽃으로 행복한 오후) 화상(원격) 프로그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모 신청·선정 : '18. 9. ~ '20. 9.
 - (내 마음의 동반자) '18. 9월 공모(전남도), 12월 선정
 - (꽃으로 행복한 오후) '20. 9월 공모(미래에셋생명), 선정
- 프로그램 추진 : '19. 1. ~ '20. 12.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 실적	프로그램 주요내용	비고
내 마음의 동반자	'19. 1. ~ 12.	연중 수시 1,643명	· 우울증 감소·대인관계 향상 상담(67회) · 공예·건강교육 및 정서지원 운영(70회) · 전문 상담사와 함께하는 숲 체험(6회)	대면
꽃으로 행복한 오후	'20. 9. ~ 12.	6회 275명	· 원예 프로그램으로 물품은 택배로 받고 교육은 화상(원격)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비대면

※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90% 이상 만족

□ 기대효과

- 프로그램 참여 결과물 책자 발간('오늘이 제일 좋은날')으로 자존감 향상
- 화상 및 원격방식 도입한 원예교육으로 손쉬운 참여와 집중도 향상
- 외출이 제한적인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여
우울증 등 증상 완화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 백만원)

처분 총계 (가:다)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 사례 (다)
	계 (가)	징계	훈계	계 (나 =A:E)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경고 (E)	
					합계 (A =a+b)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19	2 (4명)		2 (4명)	15	4 (4.6)	1 (4.6)			1 (4.6)	3	4	3	4			2

(단위 : 건 / 백만원)

연 번	시군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명)			행정상 처분(건)											비고	
			계	징계	훈계	총 계 (가+나+다+라+마)	시 정							주 의 (나)	개 선 (다)	통 보 (라)		경 고 (마)
							계 (가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회수	추징	감액		기타					
						건 (A)	금액											
		11건	4		4	15	4	1	4.6				4.6	3	4	3	4	
1	영광군	노인일자리 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2									1	1		
2	나주시 영광군	사회복지시설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부적정				2										2		
3	영광군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업무 처 리 부 적 정				1	1						1					
4	보성군 영광군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 리 지 도 · 감 독 부 적 정				2								2				
5	영광군	사회복지시설 회계 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 적 정				2	1						1			1		
6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회계 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업무 처리 부 적 정				1	1	1	4.6				4.6					
7	나주시	장애인 거주 시설 개축에 따른 이용자 이주 조치 부적정	2		2	1										1		
8	나주시	장기요양기관 요양 보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등 미 실 시	2		2	1	1						1					
9	나주시	○○○○○○○ ○○○ 산하 이용거주시설 지도·감독 부적정				1										1		

연 번	시군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명)			행정상 처분(건)										비고		
			계	징계	훈계	총 계 (가+나+다+라+마) (가=A+B)	시 정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주 의 (나)	개 선 (다)		통 보 (라)	경 고 (마)
							재정상 처분(백만원)		회수	추징	감액	기타						
							계 (가 =A+B)	소계										
						건 (A)	금액											
10	보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 리 부 적 정				1										1		
11	보성군	○○○○○○○○ 운영사무 위·수탁 부 적 정				1								1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내 역			
		양정	소 속	직 급	성 명
계	4명(훈계 4)				
1	장애인 거주시설 개축에 따른 이용자 이주 조치 부적정	훈 계	○○○○과	지방사회복지 읍	○○○
		훈 계	○○○○과	지방보건 읍	○○○
2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등 미실시	훈 계	○○○○과	지방사회복지 읍	○○○
		훈 계	○○○○과	지방사회복지 읍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 ① 노인일자리사업 관리·감독 부적정(개선, 주의) 8
- ② 사회복지시설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부적정(개선) 14
- ③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7
- ④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21
- ⑤ 사회복지시설 회계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시정, 통보) 24
- ⑥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29
- ⑦ 장애인 거주시설 개축에 따른 이용자 이주 조치 부적정(훈계, 통보) .. 34
- ⑧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등 미 실시
(훈계, 시정) 38
- ⑨ ○○○○○○ ○○○ 산하 이용·거주시설 지도·감독 부적정(통보) 45
- ⑩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리 부적정(통보) 50
- ⑪ ○○○ ○○○○○○ 운영사무 위·수탁 부적정(주의) 56

전라남도

개선·주의 요구

제 목 노인일자리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영광군(노인가정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광군은 2020. 1월부터 12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형사업단¹⁾’ 3개 사업을 [표 1] “2020년 영광군 시장형사업단 사업 명세”와 같이 ‘○○○○○○○○○○’와 ‘(○)○○○○○○○○○○’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표 1] 2020년 영광군 시장형사업단 사업 명세

사 업 명	수행기관	참여대상	배정인원(명)	지원·집행액(천원)
야생화 및 채소농장 재배관리사업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40	106,800천원 (40명×2,670천원)
실버푸드마켓 반찬사업			30	80,100천원 (30명×2,670천원)
농산물 재배·판매사업	(○)○○○○○○○○○○		40	106,800천원 (40명×2,670천원)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이하 “노인일자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장형사업단’ 사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1인당 2,670천원이고, ‘시장형사업단’ 사업의 참여자에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연 2,500천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

1)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사업

조사업 내용과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사업의 수행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참여자를 정확히 파악한 후 노인일자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참여자×2,670천원)을 지원하고, 수행기관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지침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였다.

아울러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등에는 반드시 영광군수의 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보조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노인가정과)은 2020년에 실시한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사업 중 ‘○○○○○○○○’가 수행한 ‘야생화 및 채소농장 재배 관리사업’(이하 “야생화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자 중 7명이 [표 2] “야생화 사업 참여 포기자 명단 명세”와 같이 중도 포기하였으므로

당초 배정인원 40명을 기준으로 교부한 보조금 106,800천원 중 중도 포기한 7명분의 보조금 8,232천원을 감액하여야 하였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가 당초 교부한 106,800천원 전액을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야생화 사업 참여 포기자 명단 명세

(단위 : 원)

사업 포기자			미참여 기간(월)	감액 대상액 ²⁾
성명	사 유	포기일		
7명				8,232,500
○○○	건강악화	2020-07-31	5개월 (8월~12월)	1,112,500
○○○	건강악화	2020-07-31		1,112,500
○○○	건강악화	2020-08-01		1,112,500
○○○	희망근로사업 참여	2020-08-03		1,112,500
○○○	가족반대	2020-07-31		1,112,500
○○○	건강악화	2020-07-01	6개월 (7월~12월)	1,335,000
○○○	희망근로사업 참여	2020-06-22		1,335,000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연 1인당 지원기준 2,670,000원 / 12월 = 222,500원 × 5개월 = 1,112,500원
 연 1인당 지원기준 2,670,000원 / 12월 = 222,500원 × 6개월 = 1,335,000원

또한 같은 해 ‘○○○○○○○○’가 수행한 ‘실버푸드마켓 반찬사업’(이하 “실버푸드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서도 당초 참가자가 29명으로 배정인원 30명 대비 1명이 미달이었고 참가자 29명 중에서도 9명이 [표 3] “실버푸드 사업 참여 포기자 명단 명세”와 같이 중도포기 하였으므로

당초 배정인원 30명을 기준으로 교부한 보조금 80,100천원 중 당초부터 미달된 1명분의 2,670천원과 중도 포기한 9명분의 보조금 13,573천원 등 총 16,243천원을 감액하여야 하였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가 당초 교부한 80,100천원 전액을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실버푸드 사업 참여 포기자 명단 명세

(단위 : 원)

사업 포기자			미참여 기간(월)	감액 대상액 ³⁾
성명	사유	포기일		
9명				16,242,500
○○○	건강악화	2020-07-31	5개월(8월~12월)	1,112,500
○○○	건강악화	2020-08-03		1,112,500
○○○	사망	2020-07-09	6개월(7월~12월)	1,335,000
○○○	건강악화	2020-05-13	7개월(6월~12월)	1,557,500
○○○	건강악화	2020-05-13		1,557,500
○○○	건강악화	2020-05-13		1,557,500
○○○	건강악화	2020-05-13		1,557,500
○○○	건강악화	2020-05-18		1,557,500
○○○	건강악화	2020-02-05	10개월(3월~12월)	2,225,000
※ 당초 배정인원(30명)에서 미달된 1명분 보조금			12개월(1월~12월)	2,670,000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가 ‘야생화 사업’과 ‘실버푸드 사업’의 인건비 집행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지침에서 정한 보조금 지출 한도액(연 2,500천원)을 초과하여 [표 4] “인건비 지출 한도액 초과 명세”와 같이 1인당 적게는 64천원에서 많게는 521천원까지 총 11건, 3,029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는데도 이를 감액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3) 연 1인당 지원기준 2,670,000원 / 12월 = 222,500원 × 5개월 = 1,112,500원
 연 1인당 지원기준 2,670,000원 / 12월 = 222,500원 × 6개월 = 1,335,000원
 연 1인당 지원기준 2,670,000원 / 12월 = 222,500원 × 7개월 = 1,557,500원
 연 1인당 지원기준 2,670,000원 / 12월 = 222,500원 × 10개월 = 2,225,000원

[표 4] 인건비 지출 한도액 초과 명세

(단위 : 원)

사업명	대상자	보조금 인건비 지출액	초과 지출액(감액대상)
2개 사업	11명		3,029,120
야생화 사업	4명		1,018,000
	○○○	3,021,800	521,800
	○○○	2,659,240	159,240
	○○○	2,615,400	115,400
	○○○	2,721,560	221,560
실버푸드 사업	7명		2,011,120
	○○○	2,950,000	450,000
	○○○	2,564,920	64,920
	○○○	2,934,120	434,120
	○○○	2,940,520	440,520
	○○○	2,906,160	406,160
	○○○	2,615,400	115,400
	○○○	2,600,000	100,000

※ 자료 : ○○○○○○○○○○와 (○)○○○○○○○○○에서 제출한 정산서 재구성

아울러 2020년에 실시한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와 ‘(○)○○○○○○○○○’가 [표 5] “보조사업 임의변경 사용 명세”와 같이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영광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여 집행하였는에도 사업수행상황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표 5] 보조사업 임의변경 사용 명세

(단위 : 원)

수행기관	사업명	구 분	당초 계획(A)	실제 집행액(B)	증감(B-A)
○○○○ ○○○○	야생화 사업	계	106,800,000	106,800,000	-
		인건비	68,000,000	69,656,980	1,656,980
		사업비	38,800,000	37,143,020	-1,656,980
		재료비	29,000,000	28,664,275	-335,725
		홍보비	200,000	-	-200,000
		교육/회의/간담회	2,300,000	1,471,500	-828,500
		운영비	7,300,000	7,007,245	-292,755
	실버푸드 사업	계	80,100,000	80,100,000	-
		인건비	51,000,000	39,808,200	-11,191,800
		사업비	29,100,000	40,291,800	11,191,800

수행기관	사업명	구 분		당초 계획(A)	실제 집행액(B)	증감(B-A)
			재료비	21,500,000	35,553,500	14,053,500
			장비구입비	550,000	-	-550,000
			홍보비	200,000	-	-200,000
			교육/회의/간담회	1,710,000	931,500	-778,500
			운영비	5,140,000	3,806,800	-1,333,200
(○)○○○ ○○○○	농산물 재배·판매사업	계		106,800,000	74,697,348	-32,102,652
		인건비		72,000,000	42,446,000	-29,554,000
		사업비		34,800,000	32,251,348	-2,548,652
			재료비	8,676,000	3,840,000	-4,836,000
			장비구입비	8,000,000	9,184,000	1,184,000
			사업운영비	18,124,000	19,227,348	1,103,348

※ 자료 : ○○○○○○○○○○와 (○)○○○○○○○○○에서 제출한 정산서 재구성

그로 인하여 ‘야생화 사업’과 ‘실버푸드 사업’의 중도 포기자의 보조금(24,475천원)과 인건비 초과 집행의 보조금(3,029천원)을 대기자가 있는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목적 증진 기회를 상실하였고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은 ‘○○○○○○○○○○’가 ‘야생화 사업’과 ‘실버푸드 사업’을 진행할 시 참여하는 노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노인가정과)은 ‘○○○○○○○○○○’가 [표 6] “산업재해보상보

험 미가입 명세”와 같이 ‘야생화 사업’에 참여한 33명 중에서 2명, ‘실버푸드 사업’에 참여한 20명 중 7명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명세

(단위 : 명)

수행기관	사업명	참여인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내역	
			가입 인원	미가입 인원
○○○○ ○○○○	2개 사업	53	9	44
	야생화 사업	33	2	31
	실버푸드 사업	20	7	13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노인들이 근로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불안한 환경 속에 근로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영광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광군수는

- ①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실적, 정밀한 수요 조사, 연중 사업별 중간 평가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별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제도상 개선),
- ②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후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개 선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건축허가과), 영광군(종합민원실)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와 영광군은 2018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단건축 등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시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79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시설, 교육연구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와 영광군은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하지 않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등 성실히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건축허가과)는 [표 1] “사회복지 이용·거주시설 위반 건축물 명세”와 같이 나주시 ○○면 ○○길 ○○-○ 소재 ‘○○○○○○’ 등 8개소 사회복지이용·거주시설에서 비가림막, 창고 등을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2021. 4. 9. 감사일 현재까지 위반건축물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등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사회복지 이용·거주시설 위반 건축물 명세

(단위 : m²)

시설명	위 치	위반내용	위반 면적
8개소			608.9
○ ○ ○ ○ ○	나주시 ○○면 ○○길 ○○-○	비가림막, 보일러실 증축	96.1
○ ○ ○ ○ ○	나주시 ○○길 ○○	창고, 보일러실 신증축	119.4
○○○○○○○○○○ ○○○○○○○○	나주시 ○○로 ○○	보일러실, 창고 증축	16.6
○○○ ○○○○○○	나주시 ○○○로 ○○○	창고, 식당 증축	87.6
○ ○ ○	나주시 ○○○ 1길○○	비가림막 증축	30.3
○ ○ ○	나주시 ○○○ 1길○○	연결통로 및 비가림막 증축	170.2
○ ○ ○ ○ ○ ○	나주시 ○○읍 ○○○○길 ○○○-○○	비가림막 증축	61.7
○ ○ ○ ○ ○ ○	나주시 ○○면 ○○로 ○○	가설건축물 미신고, 창고 증축	27.0

※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영광군(종합민원실)은 2021. 4. 9. 감사기간 동안 실태조사 결과 영광군 ○○로 ○○○-○○ 소재 ‘○○○○○○○○○○’ 등 22개소 사회복지시설이 [별표] “사회복지시설 위반건축물 명세”와 같이 보일러실 등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불법 시공하는 등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위반 건축물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등 실태조사 및 지도·단속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내 불법건축물 난립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재난약자들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와 영광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 영광군수는

화재에 취약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시공된 보일러실 등 불법건축물은 즉시 철거 조치하고, 비가림시설 등은 토지용도,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양성화 또는 철거방안을 검토 후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영광군(건설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광군은 관내 11,945개소(음용 1,067개소, 비음용 10,787개소)의 지하수 시설에 대해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고, 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및 준공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관련서류 1)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하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는 군수에게 준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군수는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후 준공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후 신고증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하고, 지하수 개발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신고 후 준공확인증을 발급받아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성실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지하수영향조사서 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건설과)은 [표 1] “지하수 개발·이용 미신고 명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및 신고증 발급, 준공신고 및 준공확인 등을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지하수 개발·이용 미신고 명세

위치(시설명)	소유자		사용용도	위반사항
	주소	성명		
영광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번지 〇호 (〇〇〇〇〇)	광주광역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번길 7, 〇〇동 〇〇호	〇〇〇	지하수개발·이용	미신고 관정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 구분 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시 지하수개발·이용 용도²⁾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 물 사용 여부³⁾를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용도를 변경(먹는 물 사용 여부의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접수 및 신고증 발급 업무를 수행할 때 지하수개발·이용 용도 구분에 먹는 물 사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건설과)은 [표 2]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 구분 부적정 명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증에는 음용 여부를 ‘비음용’으로 작성하고 현장에서는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3) 음용, 비음용

[표 2]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 구분 부적정 명세

위치(시설명)	소유자		용도구분 (음용 여부)	위반사항
	주소	성명		
영광군 ○○면 ○○리 ○○○번지 ○호 (○○○○○)	광주광역시 ○○구 ○○로 ○○번길 7, ○○동 ○○호	○○○	비음용	음용수로 사용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지하수개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하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양도·양수·상속·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 및 지번 변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건설과)은 [표 3] “지하수개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위반 명세”와 같이 소유자 및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2021. 4. 9.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

[표 3] 지하수개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위반 명세

시설명	당초	변경	변경내용 (변경일자)	사유
○○○○○	영광군 ○○읍 ○○리 ○○○번지 ○○○	광주광역시 ○○구 ○○로 ○○번길 7, ○○동 ○○호 ○○○	소유자변경 (2016.2.15.)	매매
	영광군 ○○읍 ○○리 ○○○번지 ○호	영광군 ○○읍 ○○리 ○○○-○번지	주소 변경 (2019.1.11.)	합병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가 되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영광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광군수는 미신고 지하수시설, 비음용으로 신고 후 음용수로 사용 중인 시설, 소유자 및 주소 변경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보성군(주민복지과), 영광군(노인가정과)

내 용

1. 업무개요

보성군과 영광군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이하 “비지정 후원금”이라 한다)의 사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6-나. 후원금의 관리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 증개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하며, 후원금을 이월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성군과 영광군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지정 후원금을 접수받아 사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성군(주민복지과)은 [표 1] “비지정 후원금 목적 외 사용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복지시설 ‘○○○○ ○’에서 비지정 후원금을 예비비 등으로 3,762천원을 사용하였으며, 관할 주무관청인 보성군수의 승인없이 시설비로 6,270천원을 사용하는 등 총 10,032천원의 비지정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는데도 2021. 4. 9.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1] 비지정 후원금 목적 외 사용 명세

(단위 : 천원)

시설명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내역	
	항	목		금액	적요
계				10,032	6건
○○○○○ ○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2018-03-08	1,301	기능보강사업 반환금
	운영비	제세공과금	2018-06-04	1,17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운영비	기능보강	2018-06-26	587	화재안전배연창 기능보강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2019-05-10	3,000	시설 양성화작업 건축설계 외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2019-05-10	3,270	시설 양성화작업 건축설계 외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2020-12-24	700	복리후생경비 지급(최상민 외 4명)

※ 자료 : 보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영광군(노인가정과)은 ○○○○○지역아동센터가 [표 2] “비지정 후원금 예비비 편성 등 부적정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으로 편성해야 할 비지정 후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비지정 후원금 중 관할 주무관청인 영광군수의 승인 없이 2020년에 석면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공사를 위해 시설비를 2,750천원 집행하였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표 2] 비지정 후원금 예비비 편성 등 부적정 명세

(단위 : 천원)

시설명	회계연도	비지정 후원금 모금액	예비비 편성 (이월금)	비지정 후원금 중 부적정 집행	금액
○○○○○ 지역아동센터	2018	20,212	4,258	-	-
	2019	8,304	3,413	-	-
	2020	7,103	1,178	석면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공사	2,750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모집액 기준)

그로 인하여 후원금의 집행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보성군과 영광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보성군수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지정 후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영광군수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지정 후원금을 후원금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비지정 후원금에서 시설비로 사용 시 주무관청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통보

제 목 사회복지시설 회계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영광군(노인가정과, 사회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영광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 1] “영광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명세”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39개소에 보조금 1,101억 92백만원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표 1] 영광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명세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보 조 금 지 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9	110,192	35,729	38,107	36,356
지 역 아 동 센 터	14	4,269	1,200	1,549	1,520
노 인 생 활 시 설	12	98,099	32,289	34,080	31,730
아 동 생 활 시 설	9	3,952	1,197	1,276	1,479
장 애 인 · 정 신 생 활 시 설	4	3,872	1,043	1,202	1,627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사회복지시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2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은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노인가정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 2]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보험 미가입 현황 명세”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대표자 ○○○) 등 12개소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업무 담당자가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보조금 집행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표 3] “특정감사기간 중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보험 가입 현황 명세”와 같이 ○○○ ○(대표 ○○○) 등 7개소 사회복지시설은 특정감사기간 중에서도 재정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등 재정보증보험 가입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보험 미가입 현황

시 설 명	대표	회계담당자 수	미가입회계담당자 수	비 고
12개 시설			12명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1명	1명	수입원과 지출원 겸임
○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1명	1명	"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1명	1명	"
○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1명	1명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1명	1명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1명	1명	"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1명	1명	"
○ ○ ○ ○ ○	○○○	1명	1명	"
○ ○ ○ ○ ○ ○ ○ ○ ○ ○	○○○	2명	1명	
(○) ○ ○ ○ ○ ○ ○ ○	○○○	2명	1명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특정감사기간 중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보험 가입 현황 명세

시 설 명	대표	회계담당자 수	미가입 회계담당자 수	감시기간 중 가입 현황	
				인원	가입일
7개 시설			8명	8명	
○ ○ ○ ○	○○○○	2명	1명	1명	‘21. 4. 8.
○ ○ ○ ○ ○ ○ ○ ○	○○○○	2명	1명	1명	‘21. 4. 8.
○ ○ ○ 지 역 아 동 센 터	○○○○	1명	1명	1명	‘21. 4. 7.
○○○○○○○지역아동센터	○○○○	1명	1명	1명	‘21. 4. 7.
○ ○ ○ ○ ○ ○ ○	○○○○	1명	1명	1명	‘21. 4. 7.
○ ○ ○ ○ ○ ○ ○	○○○○	1명	1명	1명	‘21. 4. 6.
○○○○○○○지역아동센터	○○○○	2명	2명	2명	‘21. 4. 5.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회계 사고로 인하여 변상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회계 담당자에게 예견치 않은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도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사회복지시설 회계처리 지도·점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에 따르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¹⁾」,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공사·용역 등의 계약은 검사를 완료한 후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계약 및 대가의 지급 등이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노인가정과)는 2020. 2. 25.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 ‘2020년 별관동(신관) 코로나 격리실 금속창호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1)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16백만원을 계약상대자인 (주)○○○○○(대표 ○○○)가 아닌 ‘○○○’에게 송금하여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집행²⁾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 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였다.

4.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보조금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광군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영광군(사회복지과)은 운영보조금³⁾으로 지원한 법정운영비를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고 [표 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보조금 목적외 사용 명세”와 같이 목적외로 부당 사용하였는데도 보조금의 정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보조금 목적외 사용 명세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용일	거래처	거래내용	금액
○○○○○	2020 운영보조금	2020.12.31.	○○냉동	저온저장고시설(1대)	6,972

※ 자료 : 영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21. 4. 7. 부당집행 경위 확인 결과) '2020년 별관동(신관) 코로나 격리실 금속창호공사'를 (주)○○○○○(대표 ○○○)가 공사 시행하고 대금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표 ○○○, ○○○ 누나)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시행자인 ○○○에게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나 공사 시행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3) (운영보조금 교부 목적) 약품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의료재활사업비, 부식비 등

그로 인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으며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영광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광군수는

- ① 사회복지시설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시정),
- ②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 담당자 정기교육, 사회복지시설 집행내역에 대해 담당공무원 상호교차 점검 등을 실시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주시 소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5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2.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2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이때 회계 관직·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수입원 또는 지출원 등 회계담당자를 임명할 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상의 손

해를 대비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표 1] “지역아동센터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명세”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시설은 한 번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지역아동센터 등 17개 시설은 2020년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21년 3월부터 가입하였는데도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지역아동센터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명세

시설명	연도별 가입현황				보상한도
	2018	2019	2020	2021	
○ ○ 지 역 아 동 센 터	미 가입	미 가입	미 가입	미 가입	천만 원 이상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4. 5.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4. 5.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3. 19.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3. 25.	"
○○○○○지역아동센터	"	"	"	'21. 3. 25.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4. 5.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3. 19.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3. 22.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3. 19.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3. 22.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3. 19.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3. 19.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3. 23.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3. 17.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3. 21.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3. 23.	"
○ ○ ○ 지 역 아 동 센 터	"	"	"	'21. 4. 5.	"
○ ○ 지 역 아 동 센 터	'18. 9. 13.	'19. 9. 19.	'20. 9. 19.	미 가입	"
○ ○ ○ 지 역 아 동 센 터	'18. 10. 1.	'19. 10. 1.	'20. 10. 27.	"	"

※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회계담당자에게 변상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회계담당자에게 예견치 않은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나주시 소재 지역아동센터에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게 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은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나주시는 공유재산(건물)에 대하여 연 1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손해배상 보험을 구분하여 연간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등 3개소의 시설은 나주시 소유 건물인 ○○복지회관 등을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나주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라남도지부에 매년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지역아동센터 등 3개 시설이 나주시에서 건물 화재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등 보상 관련 공제보험을 이미 가입하고 있어 별도로 공제보험을 가입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표 2] “손해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명세”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으나 보조금 정산검사 및 연 1회 시설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정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손해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명세

(단위 : 원)

시설명	건 물 명 (주소)	소유자 (임대형태)	보험가입내용		보험가입금액		가입 기간
			나주시	지역 아동센터	나주시	지역 아동센터	
계	3개소	나주시장			1,058,880	154,400	-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로 ○○○○)	나주시장 (무상임대)	건물시설물 재해(화재)복구, 신체손해(인명)	화재, 인명	504,980	50,600	매년 (1년씩)
○○지역 아동센터	○○복지회관 (○○면 ○○로 ○○○)	"	"	"	407,050	56,000	"
○○○○○ 지역아동센터	○○종합복지회관 (○○면 ○○로 ○○-13)	"	"	"	146,850	47,800	"

※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나주시에서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법령에서 정한 지역 아동센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으나 지역아동센터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매년 보조금 154,400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 포인트 세입 미조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에 따르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무용품 등 구매, 이웃돕기 등 행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이 농협 등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용 중인 보조금 전용카드의 적립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거나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적립금 사용에 따른 증빙자료를 구비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는 [별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 포인트 세입조치 명세”와 같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지 않고 적립 포인트를 방치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각 시설의 보조금 정산·집행에 대한 지도

그 결과 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4,676,403원은 세입조치 되지 않아 향후 기한에 따라 소멸될 예정이며 사용된 포인트 962,082원은 증빙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이 어려워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재정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지역아동센터의 회계담당자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임차 중인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중복가입되지 않도록 하며,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 포인트 4,676,403원을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통보

제 목 장애인 거주시설 개축에 따른 이용자 이주 조치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사회복지과)

훈 계 대 상 자 나주시 사회복지과 지방사회복지○○ ○○○
나주시 사회복지과 지방보건○○○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¹⁾에 시설노후로 개축을 위한 보조금을 [표 1]과 같이 교부하였고, ○○○○○○○○은 ‘○○○○○○○○ 개축에 따른 이용자 이주계획서’를 제출한 후 2019. 4월부터 2021.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사회복지○○ ○○○는 2019. 1. 4.부터 2021. 4. 9. 감사일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 업무 담당팀장으로, 지방보건○○○ ○○○는 2019. 7. 2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표 1] ○○○○○○○○ 개축공사 사업비 교부 명세

(단위 : 천원)

사업 내용	위치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 개축공사	나주시 ○○○ ○○○	1,827,300	628,650	314,325	414,325	470,000

※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1)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함
- 생활자(정원 50명, 현원 46명), 종사자(정원30, 현원 30)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와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른 [별표 5]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²⁾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은 시설노후로 개축공사 추진에 따라 시설 이용자(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주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³⁾으로 시설 이용자를 이주하기 위한 ‘○○○○○○○○ 개축에 따른 이용자 이주계획서’를 2019. 7. 2., 2019. 8. 9. 2회에 걸쳐 나주시(사회복지과)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나주시는 ○○○○○○○○이 제출한 이주계획서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기준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장애인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나주시(사회복지과)는 ○○○○○○○○이 이주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2021. 4. 9. 감사일 현재까지 610일 경과되도록 거실당 거주인원과 재활상담실 설치 유무 등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문서만 접수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나주계산요양원 이용자들은 [별표] “○○○○○○○○ 임시거주시설 설비 기준 검토”와 같이 설치·운영기준에 맞지 않는 거주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해 나주시(사회복지과)는 중증장애인들의 특성상 종사

2) 장애인거주시설은 6세이상의 경우 거실 1실당 정원은 8명 이하로 남녀별로 구분하고, 재활상담실·집단활동실·자원봉사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

3) ○○○○○○○○을 운영하는 동일 법인인 ○○○○○○○ ○○○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 생활자(정원 47명, 현원 11명), 종사자(정원27, 현원 7)

자들과 특별한 관계(교감) 등의 사유로 ○○○에서 임시거주 할 수 밖에 없었고,

개축에 따른 생활인 이주계획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 나주시, 법인 간 협의가 완료되었기에 기존시설 철거 전 이주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주토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 중증장애인들이 ○○○에 임시거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상당기간(2년 8개월) 거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와 복지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나주시는 ○○○○○○○○ 개축공사 착공 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을 검토하여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또한 나주시(사회복지과)는 ○○○○○○○○ 개축에 따른 생활인 이주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나 관련 보고 서류를 감사기간 동안 제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이주계획은 구두로 논의되었던 상황이지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 여겨진다.

따라서 나주시(사회복지과)의 ○○○○○○○○ 생활인 이주계획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 나주시, 법인 간 협의가 완료되었기에 기존시설 철거 전 이주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주토록 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나주시(사회복지과)는 전남도의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2021. 4. 5.~ 4. 9.) 이후 2021. 4. 28. ○○○○○○○○ 생활인을 임시 거주공간인 ○○○에서 남자 생활인 24명을 ○○○○○○○○○으로 이주(1실당 2~3명) 조치를 하였으나 여자 생활인 중 14명에 대해서는 적합한 시설로 이주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① ○○○○○○○○ 개축공사에 따른 이용인 이주계획에 대한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적정여부 검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지방사회복지○○ ○○○, 지방보건○○○ ○○○를 훈계하고(훈계),

② ○○○○○○○○ 개축공사 완료 시까지 장애인이 임시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관련법령에 정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을 검토하여 적합한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장애인 보호와 복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등 미 실시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사회복지과)

훈 계 대 상 자 나주시 사회복지과 지방사회복지○○ ○○○
나주시 사회복지과 지방사회복지○○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9. 5. 7. 전라남도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¹⁾으로부터 ‘나주시 관내 시설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표 1] “나주시 관내 시설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명세”와 같이 통보받고 2019. 5. 20. ○○○○○○ ○○○(○○○○○○○○○○ 운영 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원관련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지방사회복지○○ ○○○은 2019. 1. 4.부터 2021. 4. 9. 감사일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담당팀장으로, 지방사회복지○○ ○○○은 2017. 1. 18.부터 2019. 7. 21.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표 1] 나주시 관내 시설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명세

요양보호사	피해노인	노인 학대 행위 사례
○○○	○○○(82세)	정서적 학대행위(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광역시·도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요양보호사	피해노인	노인 학대 행위 사례
	○○○(100세)	신체적 학대행위, 방임(신체 구속상태의 노인 관리 소홀, 병원진료가 필요함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
○○○	○○○(83세)	신체적 학대행위(장시간 억제대를 사용하는 행위 등)
	○○○(100세)	신체적 학대행위(신체 구속상태의 노인 관리 소홀)
○○○	○○○(83세)	신체적 학대행위(장시간 억제대를 사용하는 행위 등)
	○○○(100세)	신체적 학대행위, 방임(신체 구속상태의 노인 관리 소홀, 병원진료가 필요함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
○○○	○○○(100세)	방임(병원진료가 필요함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
○○○	○○○(100세)	신체적 학대행위(신체 구속상태의 노인 관리 소홀)
○○○	○○○(100세)	방임 (병원진료가 필요함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

※ 자료 :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통보 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와 제6호에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9조의9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한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시설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은 개선명령, 2차 위반은 시설장 교체, 3차 위반은 시설폐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수급

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은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관내 시설(기관)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한 경우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나주시(사회복지과)는 2019. 5. 7. 전라남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라고 판단된 ‘나주시 관내 시설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처분의견 및 향후계획을 검토하면서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의 종사자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나주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2017. 12월)· 운영하고 있는 ○○○○○○ ○○○의 법인 및 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함이 적절하다고 나주시장에게 보고²⁾하였다.

이후 나주시(사회복지과)에서 ○○○○○○ ○○○에 통보³⁾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학대로 판정된 3건의 행위와 관련된 요양보호사들은 ○○○○○○○○ 운영내규 제6절(징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되,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학대행위를 덮기로 합의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가중 처분함으로써 추후 재발방지토록 하고

○○○○○○○○의 시설장과 국장은 부적절한 업무지시 및 업무개입, 과장은 사측의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 운영 주체인 ○○○○○○ ○○○은 요양보호사 ○○○ 등 5명에 대해 [표 2] “노인 학대행위 관련 직원 징계 의결 명세”와 같이 징계 조치한 후 2019. 6. 14. ‘직원 징계 의결서 통고’를 나주시(사회복

2) 나주시 사회복지과-23486(2019. 5. 16.) 「나주시 ○○○○○○ 민원관련 조사 결과 보고」

3) 나주시 사회복지과-23969(2019. 5. 20.) 「노인의료복지시설 민원관련 조사결과」

지과)에 제출하였다.

[표 2] 노인 학대행위 관련 직원 징계 의결 명세

징계대상자	징계대상 행위 (요양보호사)	징계의결	의결일
○○○	노인요양시설 입소생활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감봉 5개월	'19.6.10.
○○○	"	"	"
○○○	"	"	"
○○○	"	감봉 2개월	"
○○○	"	"	"

* 정서적 학대를 한 요양보호사 ○○○는 퇴사(2019. 3. 4.)로 징계 불가

※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의 ○○○ ○○, ○○○ ○○○○, ○○○ ○○, ○○○ ○○에 대해서는 [표 3] “민원조사 결과 관련 직원 징계 의결 명세”와 같이 징계 처분하고 2019. 6. 14. ‘노인의료복지시설 민원 관련 관할청의 처분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나주시(사회복지과)에 제출하였다.

[표 3] 민원조사 결과 관련 직원 징계 의결 명세

징계대상자	징계대상 행위	징계의결	의결일
○○○(○○)	직원에 대한 폭언 등	감봉 3개월	'19.6.12.
○○○(○○○○)	사적 분쟁에 부적절한 개입으로 민원야기 등	감봉 2개월	"
○○○ ○○	직무상(고충처리위원장) 의무위반	견책	"
○○○ ○○	직무상(노인학대 담당직원) 의무위반	감봉 1개월	"

※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나주시(사회복지과)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요양보호사와 시설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만 요구함으로써 ○○○○○○○○ 운영 주체인 ○○○○○○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시설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행정처분(1차 위반은 개선명령)을 받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등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발생하였는데도 행정처분(업무정지 3개월)을 받지 않았다.

또한 노인에 대하여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가 발

생하였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등에 따라 해당 요양보호사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인 ○○○○○○○○○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는데도 ○○○○○○○○○ 운영 주체인 ○○○○○○○ ○○○은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또한 방임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요양보호사 ○○○, ○○○, ○○○, ○○○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검토하지 않아 「노인복지법」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았으며,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요양보호사 ○○○는 퇴사했다는 사유로 징계나 고발조치 등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아울러 ○○○○○○○○○은 나주시가 ○○○○○○○ ○○○과 2017. 12. 22.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수탁자가 동 협약서 제5조4)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나주시는 동 협약서 제15조5)에 따라 해약을 검토하여야 했는데도 2021. 4. 9.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해 나주시(사회복지과)는 노인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나주시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 ○○○○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은 시설(설치자)이고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노인학대가 발생한 책임은 시설 설치자가 아닌 시설을 운영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 또한 시설 운영자인 ○○○○○○○에 처분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나주시(사회복지과)는 ○○○○○○○○○에서 노인학대 행위를 인지한

4) 제5조(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제1항 수탁자는 나주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제15조(해약) 제1항 제1호 수탁자가 본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약을 위반한 때는 수탁기간 중이라도 이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후 자체조사 결과를 관리감독청과 조사기관에 자진신고하고 정확한 판정을 통해 시정하고자 조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률 규정은 학대행위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학대행위가 발생한 후에 조치사항을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나주시(사회복지과)는 수탁법인(○○○○○○○ ○○○)에서 해당시설을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며, 나주시와 수탁법인과 신뢰 관계가 위탁운영을 해지할 만큼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노인학대행위(정서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방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인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위중한 사항으로 ○○○○○○○○ 위·수탁 협약서 제5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동 협약서 제15조에 따라 해약을 검토하여야 했으며 나주시에 ○○○○○○○○ 위·수탁 협약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문서나 보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시설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나주시(사회복지과)는 요양보호사들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의 중대한 학대행위로 보기 어려워 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호와 제6호에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의3(벌칙)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9조의9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방임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통보받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시(사회복지과)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 ① ○○○○○○○○○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미실시한 지방사회복지○○ ○○○와 지방사회복지○○ ○○○을 훈계하고(훈계),
- ② ○○○○○○○○○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행위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통보

제 목 ○○○○○○ ‘○○○’ 산하 이용·거주시설 지도·감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사회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 ○○○ 산하 이용·거주시설(이하 ‘이용·거주시설’로 한다)에 [표 1] “○○○○○○○ ○○○ 산하 이용·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11,553,166천원을 지원하고 운영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표 1] ○○○○○○ ○○○ 산하 이용·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명세

(단위 : 천원)

연도	계	○ ○ ○	○○○○○○○○	○ ○ ○	○○○ ○○○○○
합계	11,553,166	4,344,422	5,205,863	781,398	1,221,483
2018	3,696,573	1,391,207	1,661,840	276,181	367,345
2019	3,847,387	1,442,976	1,745,799	245,164	413,448
2020	4,009,206	1,510,239	1,798,224	260,053	440,690

※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2. ○○○ ○○○○○ 운영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의 세입·세출 항목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의 매출액 등을 관리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운영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 ○○○○○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훈련 제공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장비 구입비 보조금¹⁾ 486,230천 원을 지원받았고 2015. 12. 8. 일반비닐봉투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으며 도내 유일하게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작업장의 이용 효율을 높여 중증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훈련 운영 관리계획을 철저히 검토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사회복지과)는 [표 2] “연도별 가동일수 및 사업 매출 현황”과 같이 ○○○ ○○○○○의 작업 이용률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개 기관에 납품하면서 가동일수가 297일, 근로장애인 10명에 대해 임금²⁾이

1) 2010년: 인쇄기 등 4종 183,700천 원, 2014년: 압출기 68,300천 원, 2016년: 원료배합기 3,150천 원, 2018년: 압출기 등 4종 231,080천 원

2) (2018년) 364천원/1인당 월평균 임금, 7,530원/최저임금 시급
(2019년) 493천원/1인당 월평균 임금, 8,350원/최저임금 시급
(2020년) 481천원/1인당 월평균 임금, 8,590원/최저임금 시급

109,233천 원을 집행하는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업체임을 감안하여 납품기관 추가 확보와 가동 일수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연도별 가동일수 및 사업 매출 현황

(단위 : 일, 명, 천원)

연도	납품기관	공장가동일수	근로장애인	근로인건비	매출액	종사자운영비
합계	4개 시군	297		109,233	928,644	1,145,175
2018	목포, 나주, 장성	115	10	16,454	271,007	351,423
2019	목포, 나주, 장성	95	10	59,159	343,384	387,196
2020	나주, 담양, 장성	87	10	33,620	314,253	406,556

※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 참여를 활성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장애인 고용장려금 배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에 지자체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을 이용 장애인의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법인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0. 4. 14. 전라남도는 나주시(사회복지과)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 현황을 조사³⁾한 결과 장애인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2018년 46%, 2019년 38%로 사용 비율이 줄어들자 근로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이용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요청⁴⁾하였다.

3) 13개 시군 22개 시설의 고용장려금 중 장애인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된 평균 비율

4)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5415('20.4.14.),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용 관련 지도관리 철저 요청」

따라서 나주시는 근로장애인 고용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 이용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사회복지과)는 ○○○○○○ ○○○이 ○○○ ○○○○○과 ○○○○○○○○○에서 장애인 12명을 고용하였으며 [표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입 및 이용장애인 처우개선 사업비 집행 명세”와 같이 2018년 11,376천원, 2019년 16,010천원, 2020년 22,585천원 등 총 49,971천원을 지원받고도 이용장애인 처우 개선사업에 4,441천원을 집행하여 8%만 사용하는 등 이용장애인 처우개선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도 아무런 지도·관리를 하지 않았다.

[표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입 및 이용장애인 처우개선 사업비 집행 명세

(단위 : 명, 천원, %)

연도	시설명	장애인 종사자	고용장려금(A)	처우개선사업비 집행액(B)	비율 (B/A)
합계			49,971	4,441	8
2018	○ ○ ○ ○ ○ ○ ○ ○	12	11,376	-	-
	○ ○ ○ ○ ○ ○ ○ ○	2			
2019	○ ○ ○ ○ ○ ○ ○ ○	10	16,010	3,441	21
	○ ○ ○ ○ ○ ○ ○ ○	2			
2020	○ ○ ○ ○ ○ ○ ○ ○	10	22,585	1,000	4
	○ ○ ○ ○ ○ ○ ○ ○	2			

※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이용장애인의 처우개선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 ○○○○○의 이용 효율을 높여 중증장애인

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장려
금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통보

제 목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보성군(주민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보성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복지법」, 「보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표 1] “보성군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 명세”와 같이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도·감독하고 있다.

[표 1] 보성군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 명세

(단위 : 천원)

연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3,392,312	1,165,535	678,195	1,548,582
2018년	1,059,522	359,635	209,527	490,360
2019년	1,184,756	391,562	240,457	552,737
2020년	1,148,034	414,338	228,211	505,485

※ 자료 : 보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보조 관련 경비를 집행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 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견적 입찰할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성군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단가계약 또는 소액 수의계약 등을 하거나 조달청장 또는 보성군수에게 위탁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등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성군(주민복지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보조사업자인 11개소 지역아동센터로 하여금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잘 모른다는 사유로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성군(주민복지과)은 보조사업자인 보성군○○○○○○○○ 지역아동센터 등 11개소 지역아동센터로 하여금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단가계약 또는 소액 수의계약 등 가장 효율적인 계약방법으로 급식비를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교부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고,

더욱이 군은 보성군○○○○○○○○ 지역아동센터 등 11개소 지역아동센터 보조사업자가 계약방법에 대한 자체 검토 없이 사실상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급식비를 집행하고 있는데도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감사일인 2021. 4. 9.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단가계약 또는 소액 수의견적입찰 등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했다면 [표 2]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 미 절감액 명세”와 같이 연간 2~3천만원씩 3년간 8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2]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 미 절감액 명세

(단위 : 천원, %)

대 상	보조금액(A)	계약금액(B)	낙찰률	입찰시 계약 예산금액(88%)(C)	예산미절감액 (B-C)
지역아동센터 11개소	739,134	739,134	100	650,438	88,696

※ 자료 : 보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지역아동센터 공급 불균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외의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 시설의 설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신고 사항이 적법하면 그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는 지역아동센터¹⁾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1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1)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종·수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4)

구 분	아동복지시설 장	영양사	생활복지사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아동50명 이상인 경우)	2명(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지역아동센터 시설 설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2)

·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군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2021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²⁾」 ‘제3장 지역아동센터운영, 2 이용아동 선정기준, 나.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나)’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돌봄취약 아동의 아동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 파악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성군(주민복지과)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수요를 파악하여 돌봄취약 아동이 아동센터의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성군수(주민복지과)는 [표 3] ‘보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과 같이 지역아동센터에 적게는 1명 많게는 12명 등 총 34명의 아동이 등록 대기하고 있으나 대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 등 6개 면의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를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수가 상당 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위 6개면에 거주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을 원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어 타 지역 거주 아동에 비해 아동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다.

[표 3] 보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단위 : 명)

소재지	운영주체	시설명	이용아동 ³⁾ 수		이용 대기	아동센터 잠재이용아동(추정) ⁴⁾			
			정원	현원		합계	기초생활	차상위 등	일반
		계	330	306	23	2,427	212	87	2,128
○○읍	법인	○○○○○○○○○○○○○○○○○○ 지 역 아 동 센 터	29	28	12	902	57	28	817
○○읍	개인	○○ 지 역 아 동 센 터	40	34	5				
○○읍	법인	○○ 지 역 아 동 센 터	29	29	1				
○○읍	개인	○○ 지 역 아 동 센 터	29	29	0	969	82	48	839
○○읍	법인	○○○○ 지 역 아 동 센 터	29	23	1				
○○읍	개인	○○○○ 지 역 아 동 센 터	29	29	4				

2) 이하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지침’이라 한다(보건복지부 발간,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412-10)

소재지	운영주체	시설명	이용아동 ³⁾ 수		이용대기	아동센터 잠재이용아동(추정) ⁴⁾			
			정원	현원		합계	기초생활	차상위 등	일반
○○면	개인	○○○ 지역 아동 센터	29	29	2	80	12	6	62
○○면	종교	○○ 지역 아동 센터	29	25	0	162	24	2	136
○○면	개인	○○○ 지역 아동 센터	29	24	5				
○○면	개인	○○ 지역 아동 센터	29	29	4	179	15		164
○○면	개인	○○ 지역 아동 센터	29	27	0	135	22	3	110
○○면	미	설	치			31	4	2	25
○○면	미	설	치			65	11	1	53
○○면	미	설	치			35	4	0	31
○○면	미	설	치			67	4	6	57
○○면	미	설	치			37	7	3	27
○○면	미	설	치			20	0	0	20

※ 자료 : 보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보성군(주민복지과)은 지역아동센터 급식 계약 관련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당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등록 정원을 29명으로 정한 것이고, 정원을 초과하는 수요는 대기인으로 관리하며,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충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면 군수는 아동센터 대기 아동 수를 최소화하도록 아동센터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⁵⁾하거나 개인 또는 법인의 지역아동센터 확대 또는 신규 설치를

3)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지침」에 따라 시설별 정원의 60%는 돌봄취약아동, 일반아동은 40% 범위 내에서 등록하고 다만 일반아동 등록범위는 읍·면 지역은 60%, 그 외 지역은 50%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보성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정원 중 돌봄취약아동은 60%, 일반아동은 40%로 일괄적 적용하여 등록

4) 주민등록표상 아동센터 소재지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

5) 보성군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곳이 모두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수입금 구성을 살펴보면 자부담은 극히 미미하여 사실상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성군 공유 재산 등을 활용 또는 관내 건물 등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사항이라 판단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성군 지역아동센터의 수입 구성

(단위 : 천원)

수입 구성				자부담비율 (A/D)
계(A)	보조금(B)	후원금(C)	자부담(D)	
3,999,929	3,392,312	544,728	7,310	0.18%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나 감사기간 동안 이러한 시책이나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보성군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보성군수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관내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운영사무 위·수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보성군(주민복지과)

내 용

1. 업무개요

보성군은 2020. 3. 12부터 2025. 3. 11.까지 5년간 ○○○ ○○○○○○¹⁾ 운영사무를 사회복지법인 ○○○○○○○○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 사회복지법인일반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성군 ○○○○○○○ 운영조례」 제5조에 ○○○ ○○○○○○은 보성군수가 운영·관리하며 다만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

1)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

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생활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 정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의 설립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 장애인,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복지증진과 재활 및 자활이며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²⁾으로 장애인복지관³⁾, 장애인 직업재활센터⁴⁾를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성군은 ○○○ 생활시설인 보성군 ○○○○○○○ 운영사무 위·수탁 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생활시설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성군(주민복지과)는 2020. 3. 12.부터 2025. 3. 11.까지 5년간 보성군 ○○○○○○○ 위·수탁 법인을 선정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생활시설 위탁 운영이 없는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보성군 ○○○○○○○을 운영 자격이 없는 법인이 운영·관리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저하와 법인의 건전한 운영 관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보성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보성군수는 보성군 ○○○○○○○의 위탁 운영 시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그 밖에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은 2020. 4. 16. 정관 개정으로 추가

3) 이용시설로서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시설

4) 직업생활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 도모